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14시 13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담배 판매업 제외장소	3

담배 판매업 제외장소

2014.04.17 조회수 540 등록자 박종일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1
담당부서	지역경제과
상위법령	담배사업법 제16조
규칙	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9-10-30
규제시행/폐지일	2009-10-30
규제내용	제3조 (소매인의 지정기준) 3.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 가. 약국, 병·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(당초 병·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) 나. 게임장·문구점·만화방 등 청소년(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)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. 다만, 슈퍼마켓·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다.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0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3 >

Yeosu Web Contents

